



보도설명자료

국민이 공감하는 **공존의 정의**
민생에 힘이 되는 **법무행정**
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	총 5쪽(붙임 없음) / 사진 없음	
배포일시	2021. 4. 30.(금)	담당부서	법무부 검찰국

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검사인사시스템 개선을 추진합니다.

《 검사 인사 개요 》

▶ 검찰청 현황

- 대검찰청, 고등검찰청 6곳, 지방검찰청 18곳, 차치지청 10곳, 부치지청 15곳, 단독지청 16곳으로 구성
- (정원) 검사 2,292명, 일반직 8,482명 합계 10,774명

▶ 검사 인원 현황('21. 3. 31. 기준)

- 정원 2,292명, 현원 2,103명
- 대검검사급 33명, 고검검사급 686명, 일반검사 1,384명(현원기준)
- 남성검사 1,428명, 여성검사 675명(현원기준)

▶ 검사 사직 및 신규임용 현황

- '16년부터 '20년까지 5년간 연 평균 사직자는 87.2명, 신규임용자는 115.8명

▶ 검사 인사 시기

- (필수보직기간) 고검검사급 검사 1년, 일반검사 2년
- (인사시기) 일반검사 정기인사는 매년 2월 첫 번째 월요일

▶ 경향교류원칙

- 일반검사는 재경청 또는 수도권청 합계 연속 2회 근무한 경우 차회 인사 시 지방청으로 전보
- 지방청 3회 연속 근무자, 지방청 또는 수도권청 합계 4회 연속 근무자는 재경청으로 전보

①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 공식화

- 종전에 외부 민간 식당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비공식 만남을 갖고 인사의견을 주고받아 불투명한 절차라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.
-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공식화·제도화하여 인사의견 청취 후 서면으로 회신받는 등 투명하게 진행하되, 필요시 공식 장소에서 면담을 개최하여 의견청취 절차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.

② 검사 인사 기준 및 절차의 제도화

- 법무부는 '18년부터 검사 인사에 관한 기본 원칙과 기회 균등을 강화하는 세부 인사기준 및 절차를 법제화[검사인사규정(대통령령), 검사복무평정규칙(법무부령),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에 관한 규칙(법무부 예규)]하고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검사 인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.
- 일반검사에 대해 경향교류원칙을 강화하고, 법무부·대검찰청·외부기관 파견 근무를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하는 등 기회균등을 강화하였고,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평정 특례 및 장기 근속제도 확대 등을 시행하였습니다.
- 부장검사 보임 시, 형사부 및 일선 청 근무 요건을 강화하고, 다면 평가 근거 규정을 명문화하여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.

《 현행 검사 인사 원칙 개요 》

▶ 경향교류원칙 강화

- 법무부·대검찰청 전입·전출 시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원칙을 엄격 적용하여 선호 근무지에 연속하여 장기간 근무 제한

▶ **법무부·대검찰청·외부기관 파견 근무 원칙적 1회 허용**

- 일선 업무를 중시하고, 기획부서 근무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일반검사 기간 중 법무부·대검찰청·외부기관 파견 근무는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

▶ **부장검사 보임 시 형사부 및 일선 청 근무요건 강화**

- 부장검사 보임 전 형사부 근무경력 최저 연수를 상향하여 형사부·여성아동범죄조사부·공판부 등에서 2/5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부장 보임('22년 실시하는 인사부터 시행, 다만 위 요건을 바로 적용할 경우 인사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'21년까지는 1/3 이상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경우 부장 보임 중)
- 지방청에 보직 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에 한하여 중앙지검 보직 부장 보임 가능

▶ **일·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평정 특례 및 장기근속제 확대**

- 평정 시점에 육아·질병 휴직 중인 검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평정대상에서 제외
- 출산·육아 등을 목적으로 동일 청 근무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, 생활근거지가 지방인 검사의 경우 동일 고등검찰청 권역에서 최대 8년까지 근무 가능

3 형사부, 여성·아동범죄조사부, 공판부 강화

○ 검찰의 중심을 형사·공판부 및 인권보호·사법통제로 이동하기 위해 직접수사부서를 형사·공판부로 전환하고, **우수형사부장, 우수 인권감독관, 우수 형사·공판 검사**를 우대해 왔습니다.

※ 일선에서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부서 및 검사를 발굴하기 위해 모범형사부(연간), 모범검사(반기별), 우수형사부장(반기별), 형사부 우수검사(분기별), 우수 인권감독관(분기별), 사법통제 우수검사(분기별), 공판업무 최우수검사(반기별) 등 선정

- 또한, 수사과정에서의 **인권보호 기능**을 강화하고,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 하고자 18개 지검에 설치·운영 중이던 **인권감독관**을 5개 수도권 차치지청(고양·부천·성남·안산·안양)까지 **확대** 배치하였습니다.
- 대검 연구관, 외부기관 파견 검사, 국외훈련 및 국내 위탁교육 검사 선발 등 **주요 보직기회** 부여 시, 형사부·여성아동범죄조사부·공판부 등에서 근무하고 **인권보호 및 사법통제 분야**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검사에게 **인센티브**를 제공하는 등 형사·공판 분야를 전담하는 검사들의 자기 계발과 자기 진작에 힘쓰겠습니다.
- 형사부·여성아동조사부·공판부 등에서 **전문성**을 쌓은 검사를 **관련 부서 부·과장**으로 적극 **발탁**하도록 부서장 보임 시 경력 요건 충족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.

4 검사 전문 역량 강화

- 검사의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'13년 공인전문검사 제도를 시행한 이래 '21년 4월까지 **46개 분야**에서 **총 183명**의 공인전문검사 [1급(블랙벨트) 4명, 2급(블루벨트) 179명]를 **인증**하였고, **26개 분야**에 검사들의 연구모임인 '**커뮤니티**'를 구성해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.
- ※ (공인전문검사 現況) 성범죄 16명, 조세 12명, 공정거래 7명, 증권·금융 7명, 보건·의약 6명, 지식재산권 5명, 피해자보호 4명, 범죄수익환수 4명 등
- 또한, **전국 11개** 검찰청을 **중점검찰청**으로 지정하고, 중점검찰청의 전문부서 근무 중인 검사는 해당 전문분야 업무를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필수보직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< 중점검찰청 지정 현황 >

연번	청명	분야	연번	청명	분야
1	서울동부지검	사이버범죄	7	수원지검	첨단산업보호
2	서울남부지검	금융	8	대전지검	특허
3	서울북부지검	조세	9	부산지검	해양
4	서울서부지검	식품	10	울산지검	산업안전
5	의정부지검	환경	11	제주지검	자연유산보호
6	인천지검	국제			

- 형사부·여성아동범죄조사부·공판부 등 검사들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축적한 실무경험을 연구활동을 통해 발전시키고, **연구성과**를 다시 **실무에 접목**할 수 있도록 **전담업무**를 꾸준히 담당할 수 있는 **인사 시스템 구축**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.
- 전문검사 커뮤니티 활동 내역과 커뮤니티의 추천, 전문사건 처리 현황 등을 인사의 중요 고려 요소로 삼아 형사사법 전문가로서 검사들의 **전문성 함양**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.

5 향후 계획

- 앞으로도 **인권보호**와 **사법통제**와 같은 검찰 본연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검사들이 제대로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 **복무평가 시스템**을 개선하고, **검찰 조직개편**도 이에 부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.
 - 일반 형사사건, 여성아동범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의 수사,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한 검사들도 우대받는 인사원칙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.
- **법무부**는 변화된 사법환경에 적합하도록 검찰 인사·조직을 꾸준히 개선하기 위해 **대검**을 비롯한 **검찰 구성원들**의 의견을 수렴하여 **합리적인 검찰제도 개선**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☑